

즉시 배포용: 2019년 11월 6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유효한 점유 증명서 없이 임대료를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

Cuomo: "모든 뉴욕 주민은 안전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장소를 집으로 삼을 자격이 있습니다. 새로운 법은 이 위대한 주의 모든 뉴욕 주민에게 동등한 보호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며, 표준 이하의 주택을 통해 단번에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입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유효한 점유 증명서가 없는 기간 동안 집주인이 임대료를 징수하거나 미지불 퇴거 절차를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S.2576/A.1646)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세입자 및 소유자가 유효한 점유 증명서가 없는 거주지에 거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법은 인구가 325,000명 미만인 도시에 적용하기 위해 기존 법률을 확장합니다. 이 법안은 즉시 발효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뉴욕 주민은 안전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장소를 집으로 삼을 자격이 있습니다. 새로운 법은 이 위대한 주의 모든 뉴욕 주민에게 동등한 보호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며, 표준 이하의 주택을 통해 단번에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입니다."

Jamaal T. Bailey 상원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렴한 주택은 우리 주에서 점점 커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비참하고 안전하지 않은 주거 환경에서 살고 있는 세입자와 경우에 따라 불법 주택에서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과한 금액을 청구하는 임대인을 계속해서 발견합니다. 이 법안은 임대인이 점유 증명서 없이 임대료를 징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렇게 하면 세입자가 적절하고 안전한 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 법안에 서명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신 Stewart-Cousins 다수당 대표님과 Heastie 의장 그리고 의회에서 이 법안을 후원하여 리더십을 보여 주신 Pamela Hunter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Pamela J. Hunter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세입자는 표준 이하의 위험한 생활 환경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점유 증명서가 없는 경우 임대료의 징수를 금지함으로써 건물의 안전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다거주 법(Multiple

Residence Law)에 추가되어, 이제 이러한 상식적인 접근법이 주 전역의 도시에 적용될 것입니다."

이 법안은 2019년 6월 14일에 Cuomo 주지사가 서명한 포괄적인 세입자 보호를 기반으로 합니다. 2019년 주택 안정성 및 임차인 보호법(Housing Stability and Tenant Protection Act)으로 알려진 이 일괄적 개혁은 주지사의 사법 어젠다(Justice Agenda)의 주요한 부분으로, 수백만 명의 뉴욕 주민을 위해 저렴한 주택을 보호하는 주 역사상 가장 전면적이고 적극적인 임차인 보호 조치를 제정합니다.

건물 소유자가 다거주 법 및 다주거지 법(Multiple Dwelling Law) 모두에 따라 입주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면 점유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인구수가 325,000명 이하인 도시에 다거주 법이 적용됩니다. 뉴욕시에서 다주거지 법은 현재 주택 소유자가 점유 요건 증명서를 위반하여 거주지를 차지하는 기간 동안 임대료를 징수하거나 미지불 퇴거 절차를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점유 요건 증명서의 위반을 방지하고 주거 환경이 거주하기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두 법률 간의 더 많은 일관성을 제공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